교무행정요강

제정 1991. 9. 10. 102차 개정 2020. 4. 20.

제11장 시 험

제69조(감독자 배정) ①1개 고사장 응시 학생수 50명당 감독자 1명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사장별 응시 학생수는 당해 실 수용인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②1개 고사장 응시 학생수가 50명 이상일 때에는 감독자를 증배하여야 한다.

제70조(성적평가) ①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성적평가는 다음의 원칙에 준하여 상대평가를 적용한다. 다만, 교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0.3.1., 2003.5.16., 2006.5.12., 2008.3.26., 2012.3.22.)

1. 기본적용(개정 2012.3.22., 2017.3.6., 2019.2.15.)

〈서울캠퍼스〉

등 급	상대평가비율
A+, A	0 ~ 35%
B+, B	0 ~ 70%
C+, C, D+, D, F	30% 이상

〈GLOCAL(글로컬)캠퍼스〉

등 급	상대평가비율
A+, A	0 ~ 35%
B+, B	0 ~ 70%
C+, C, D+, D, F	30% 이상

2. 평가방법(개정 2012.5.7., 2013.6.14., 2014.12.17., 2016.2.24., 2017.3.6., 2017.11.30., 2019.2.15., 2020. 2. 19.)

〈서울캠퍼스〉

구분	평가방법
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5명 이상인 교과목	상대평가
교직(교육실습, 교직실무 제외), 실험 · 실습 · 실기, 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0명 이상 15명 미만인 교과목	상대평가 (다만, A+, A등급 40% 이하)
교육실습, 교직실무, 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기초교양 S/W영역 교과목	절대평가
캡스톤디자인, 드림학기제, NCS교육과정, 토론식강의, 플립드러닝 교과목	절대평가 (A, B, F만 부여)

* 절대평가시 전원 A+ 부여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신설 2015.3.3.)

* 절대평가(ABF제)의 성적평가방법 적용 시 과목구분에 따라 학사팀 또는 대학교육혁신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신설 2017.11.30.)

〈GLOCAL(글로컬)캠퍼스〉

구분	평가방법
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5명 이상인 교과목	상대평가
교직(교육실습, 교직실무 제외), 실험 · 실습 · 실기, 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0명 이상 15명 미만인 교과목	상대평가 (단, A+, A등급 40% 이하)
교육실습, 교직실무, 평점표상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교과목, 군사학 관련 교과목	절대평가
플립드러닝,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K-Project 및 Nano-LAB교과목	절대평가 (A, B, F만 부여)

* 절대평가시 전원 A+ 부여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P/N(Pass/Non-pass)평가: 현장실습, 봉사, 지도(면담)교과목 및 사전에 승인된 교과목에 대하여 P/N평가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강신청 개시 전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음

3.〈삭 제(2012.5.7.)〉

4. 외부실습에 따른 평가성적은 예외로 한다.

②〈삭 제(2012.3.22.)〉

③〈삭 제(2012.3.22.)〉

④〈삭 제(2012.3.22.)〉

⑤〈삭 제(2012.3.22.)〉

제70조의2(성적제출) ①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학기말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점된 성적과 과제 및 출석성적 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정기시험 중 1개 시험만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성적만을 해당 평점란에 기입(입력)한다.(신설 2012.3.22. 개정 2016.6.13.)

②성적 평점표는 학기말 시험종료 후 2주전까지 개설학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점표와 답안지는 행정실에 보관(전임교원은 답안지만 본인 보관)하여 일정기간 학생의 열람에 응한다.(신설 2012.3.22. 개정 2016.4.20., 2016.6.13.)

③평점표 및 시험답안지의 보존연한은 시험종료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신설 2012.3.22.)

제71조(부정행위자 처리) 학칙 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한 시험중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리는 다음에 의하되 학생복지처장(GLOCAL(글로컬)캠퍼스는 학생취창업처장)의 정식 통보를 근거로 한다.

1. 응시불허

시험문제를 발표한 후에는 응시자의 입장을 불허한다. 다만, 외부에서 시험 문제를 탐지하지 않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응시를 허락할 수 있다.

2. 답안지 무효

가. 응시자가 본인 성명을 지웠다가 다시 기재한 경우

나. 타인의 답안지, 노트,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 본 경우

3. 무기정학

가. 답안지를 작성, 상호 교환한 경우

나.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다. 고사장 밖에서 답안을 작성, 투입한 경우

라.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경우

4. 유기정학

가.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 보고 답안지를 작성한 경우

나. 타인의 답안지 작성을 구두로 방조하는 경우

5. 퇴학처분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학생 신분을 벗어난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